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 보안관리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고성군

내 용

경상남도 고성군에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PC를 통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전자정부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 등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와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 정보보호체계 운영 규정」 ‘별표1 사용자 보안관리 매뉴얼’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PC 보안 관리를 위하여 통합 PC 관리 솔루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내부정보유출방지(보안 USB)솔루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기타 정보보안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보안 솔루션

션 등 보안 S/W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기관에서는 업무용 및 공용 ○○에 대하여 0000년까지 ○○○○○○○○○(○○○, ○○ 등)에 대하여 ○○할 수 있는 ○○○○○○ ○○○○○○을 설치하고 ○○○○○○ 메모리를 사용하여 ○○의 ○○ ○○·○○·○○·○○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였으나 0000년 0월부터는 ○○○○○○○○○가 ○○○○○○○○○ 0 버전으로 업데이트 됨에 따라 ○○○○○○ ○○○○○의 서비스지원 불가로 ○○○○○를 설치하지 않고 ○○○○○○ ○○○○○를 등록하여 사용하였다.

○○○○○○를 사용 시에는 ○○ ○○에서 ○○로 ○○가 ○○되는 것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여 ○○○○○나, ○○○○○ 등의 ○○○○○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었으나 ○○ ○○○를 사용하지 않는 현재는 각 부서별로 ○○○○○를 ○○○하고 각 부서장 책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 ○○의 자료가 ○○되는 ○○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의 ○○○ 확보 및 ○○○○○의 ○○○○ 방지 등의 보안업무를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고성군수는

○○의 ○○○○ 및 ○○○○ 등의 ○○가 ○○로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